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855호
- 다. 제 출 일 : 2025. 5. 26.
- 라. 회 부 일 : 2025. 5. 29.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959억 6백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입 계획에 반영하고,
- 나. 증가한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5년 지출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는 860억 64백만 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은 785억 24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5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세외수입		31,279,077	31,279,077	31,279,077	- (-)
경상적세외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공공예금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임시적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기타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256.3)
보전수입등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 2025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증감률)	2차 변경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7749.9)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다동공원 조성사업	1,096,381	1,096,381	85,854,381	84,758,000
	시설비	-	-	84,758,000	84,758,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96,381	1,096,381	1,096,381	-
	창동차량기지 S-DBC조성 MP단 운영	-	30,000	30,000	30,000
	사무관리비	-	30,000	30,000	30,000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가 보수	-	30,000	30,000	30,000
	시설비	-	30,000	30,000	30,000
	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10,000	-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
	기금 관리비	10,000	10,000	10,000	-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증감률)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재무활동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16.2)
	보전지출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여유자금 예치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일반예치금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이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959억 5백만 원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는 당초 지출계획 대비 7,749.9% 증가한 860억 64백만 원으로 변경하며, 여유자금예치는 16.2% 증가한 785억 24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5.5.26 일 시장 제출하여 '25.5.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2025년 기금수입 계획 >

(단위: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8,693	164,598	95,905 (139.6%)
부담금	26,350	26,350	-
이자수입	3,405	3,405	-
그외수입	1,523	1,523	-
예치금회수	37,414	133,319	95,905 (256.3%)

< 2025년 기금지출 계획 >

(단위: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8,693	164,598	95,905 (139.6%)
비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비)	1,096	86,064	84,968 (7,749.9%)
행정운영경비	10	10	-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67,586	78,524	10,937 (16.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¹⁾에서 정책사업²⁾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며, 정책사업 ·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함(「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3.7)」 p.296)

있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나. 검토 내용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다동공원 조성사업)에 10억 96백만 원, ▲기금 관리비 10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 675억 8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기금법」 제11조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2025년 제2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25.4.24. ~4.25.)⁴⁾를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1차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에서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용역’ 등 5건의 정책사업⁵⁾이 신규로 편성되어 기금수입, 기금지출 계획의 총액 변동 없이 ‘비용자성사업비(증 2억 10백만 원)’와 ‘재무활동(감 2억 10백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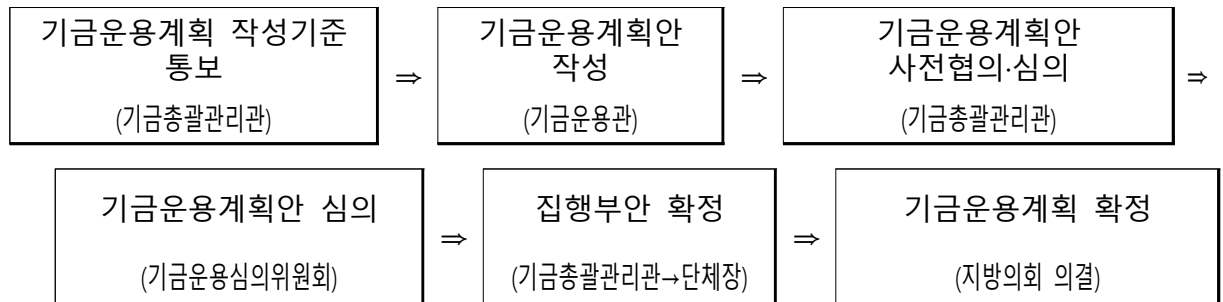
4) 「2025년 제2차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일 시 : 2025.4.24.~5.25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총 9명(내부3, 외부5, 시의원1))
- 심의 안건 및 의결결과 : 총 1개 안건 / 원안가결

5)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50백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용역(50백만 원), ▲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 공사 보수 공사(30백만 원),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조성 MP단 운영(30백만 원), ▲수색역 일대 지역상행 발전계획 수립 용역(50백만 원)

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음. 이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기금법」상 시의회의 의결 대상은 아님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



< 2025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 초 (A)	1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지 출 합 계		68,692,849	68,692,849	-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1,096,381	1,306,381	210,000 (19.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096,381	1,306,381	210,000 (19.2%)
	1.다동공원 조성사업	1,096,381	1,096,381	-
	시설비	-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96,381	1,096,381	-
	2.창동차량기지 S-DBC조성 MP단 운영	-	30,000	30,000
	사무관리비	-	30,000	30,000
	3.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4..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사 보수	-	30,000	30,000
	시설비	-	30,000	30,000
	6.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 초 (A)	1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기본경비	10,000	10,000	-
	기금 관리비	10,000	10,000	-
재무활동		67,586,468	67,376,468	210,000 (0.3%)
	보전지출	67,586,468	67,376,468	210,000
	여유자금 예치	67,586,468	67,376,468	210,000
	일반예치금	67,586,468	67,376,468	210,000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연말 기준 도시재생기금 조성액은 총 1,339억 98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음. 2024년도 당해 사업의 사고이월액 6억 78백만 원을 제외한 실질 가용자금 1,333억 19백만 원을 2025년도 예치금회수(수입) 항목에 반영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 규모는 당초 686억 93백만 원에서 1,645억 98백만 원으로 약 139.6% 증액됨

<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백만 원)

'24년 총 수입 : 135,177		'24년 총 지출 : 135,177	
'23년말 조성액 (①)	'24년 수입액 (②)	'24년 사용액 (③)	'24년말 조성액 (④=①+②-③)
79,687	55,490	1,179	133,998
- 이월액('23년→'24년): 121 - 예치금회수: 79,566	- 이 자 수 입 : 3,799 - 과 밀 부 담 금 : 49,829 - 그 외 수 입 : 1,862	- 비용자성사업비: 1,177 - 기 본 경 비 : 2	- 이월액('24년→'25년): 679 - 예치금: 133,319

- ※ 연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금액 (계좌 잔고)
예치금회수(수입) : 당해 연도말 예치금을 다음연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
예치금(지출)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2025년 기금수입 계획 >

(단위:백만 원)

구 분	1차 변경	2차 변경	증 감
계	68,693	164,598	95,905 (139.6%)
부담금	26,350	26,350	-
이자수입	3,405	3,405	-
그외수입	1,523	1,523	-
예치금회수	37,414	133,319	95,905 (256.3%)

< 2025년 기금지출 계획 >

(단위:백만 원)

구 분	1차 변경	2차 변경	증 감
계	68,693	164,598	95,905 (139.6%)
비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비)	1,306	86,064	84,758 (6,488.0%)
행정운영경비	10	10	-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67,376	78,524	11,148 (16.5%)

-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지출계획에 따르면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여유자금예치 규모는 기존 673억 76백만 원에서 785억 24백만 원으로 약 16.5%(111억 48백만 원) 확대되었으며, ‘다동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847억 58백만 원이 편성되면서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는 기존 13억 6백만 원에서 860억 64백만 원으로 약 6,488% (847억 58백만 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상 시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임
- 수입 증가분은 기 확보된 예치금의 회수에 따른 것으로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재정적 조정이며,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의 증액 또한 2024회계연도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했던 ‘다동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를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 재편성한 것임

-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2024회계연도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된(불용률 99.5%)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기금 지출 계획 재편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상협의 현황, 일정,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이번에 시의회 의결을 위해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기금 총운용 규모를 확정·조정하고, 주요 지출 항목을 구조적으로 재편한 것임
- 예치금회수를 통해 기금 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11억 48백만 원(16.5%) 증가한 785억 24백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다동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재편성에 따라 비융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는 기존 대비 847억 58백만 원(6,488.0%) 증가한 860억 64백만 원으로 조정됨
-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2024회계연도에도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해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미집행된 전례가 있는 사업으로, 이번 재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보상 일정·임차인 협의 현황 등 집행 기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금관리부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비용자
성사업비(정책사업비)로 편성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체계(사전
절차 이행 여부 점검 등)를 강화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
음